

11월1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건축구분	심의구분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비고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000P002771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동 734	2,832	163.53	296.57	5.77	7.92	단독주택	2/1	보전녹지지역	20.11.05	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2	20206500000P002876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35	19,318	1,697.89	2,955.5	8.7892	5.1222	문화및집회시설	1/1	생산관리지역	20.11.05		재심의	사업전체 마스터플랜 자료 제시 바랍니다.(건축물 포함) 부설주차장 설치 사항 검토 바랍니다.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도서 제시 바랍니다. - 도로순환, 배치 등 반영 최종심의내역결과 및 반영여부 제시 바랍니다.(도서 포함) 도서 보완 바랍니다. - 입면도, 대지 종·횡 단면도(조성 전,후) - 대지 현황을 알수 있는 현황측량성과도
3	20206500000P002951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15-214	3,436	382.8	656.84	11.1409	19.12	단독주택	2/	생산관리지역	20.11.05		부결	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곳자왈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